

공개용

「2021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 결과보고

2022. 1.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I. 점검실시 개요

II. 총 평

III.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IV.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I. 점검실시 개요

1. 점검배경 및 목적

-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시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점검 실시

2. 추진내용

- 점검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8개 기관에서 발주한 14개 건설공사 현장

발주처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교통 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동작구	성동구
점검대상 건설공사 수	2	2	2	2	1	2	1	2

- 점검기간: 2021. 9. 6.~ 9. 14.(기간 중 7일간)
- 감사인원: 하도급감사팀장 외 5명(명예하도급호민관 연인원 13명 참여)

3. 감사중점

- 근로자 노임 및 하도급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
- 근로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서면계약서 작성실태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접수 민원처리 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31	-	-	0	0	0	0	0	0	0	0	0	0	0	31

II. 총평

- 2021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도급 대금·임금 등 체불예방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8개 기관 14건 공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 대부분 건설공사장은 하도급 및 대금지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공사장에서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노무비 부적정지급 등이 지적되었음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노무비 부적정 지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부적정작성	전자인력관리제 미시행 등
138건	608건	79건	34건	14개소

- 또한 금번 추석 전 점검을 통해 12개 공사장에 대해 미지급 기성금 총 3,165백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토록 합의하고, 지급완료 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공사대금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부적정사용: 7개소(138건)
 -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지 않고 노무비 지급: 2개소(53건)
 -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등: 5개소(85건)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8개소(608건)
 - 법정 기재사항(임금액 등) 누락,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 미사용 등
- 노무비 부적정 지급: 2개소(79건)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및 작성 부적정: 3개소(34건)
 - 계약서 미작성 10건, 법정 기재사항 누락 24건
- 기타(하도급 계약내용 지연통보 등): 14개소
 - 전자카드 및 전자인력관리제 미시행: 4개소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지연발급 및 미발급: 3개소
 - 현장별 보증서 지연발급 및 안내문 미게시: 6개소
 - 하도급 계약내용 지연통보: 1개소

□ 조치사항



- 지적사항 총 31건 중 조치완료 24건, 조치중 7건이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 기관(발주부서)에 통보

III.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서울교통공사: 4건(현지조치 4)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시설 설치공사 ( 공구)	가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미작성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2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3			현장별보증서 지연발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4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도시기반시설본부 : 5건(현지조치 5)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 ○○○ ○○○ ○○○○○ 건립공사	가부	근로자 노무비 지연지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2			하도급계약내용 지연통보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3	서울  건립공사	가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4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5			현장별 지급보증서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안내문게시 및 교육실시	조치 완료

서울주택도시공사 : 4건(현지조치 4)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건설공사	가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지조치	계약서 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2			건설근로자 임금 미지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3			현장별 보증서 지연발행 및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안내문 게시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4	 개설 공사	나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관악구청 : 2건(현지조치 2)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공원 ■■■■■■■■ 건설공사	가과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현지조치	2차분 공사 반영완료	조치 완료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보증서 발급 완료	조치 완료

동작구청 : 3건(현지조치 3)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 ▲▲▲▲▲▲ 시설 신축공사(▲차)	가과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2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3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금지킴이) 미사용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도봉구청 : 1건(현지조치 1)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 △△△△ △△△사업 (△△△△△ 인근)	가과	전자인력관리제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강북구청 : 5건(현지조치 5)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 □□□□□□ □□□□ 조성사업	가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이후 기성금액 구분지급 완료	조치 완료
2			현장별 보증서 지연발행 및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안내문게시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3	2021년 관내 ■■■■■■■■ ■■■■(■■■■)■■■■ (연간단가)	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지조치	계약서 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4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현지조치	계약서 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지연교부	현지조치	합의서 재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 성동구청 : 7건(현지조치 7)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 ▽▽ 공사 (장기계속, ▽차)	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노무비 구분지급 위반	현지조치	계약서 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2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3			현장별보증서 미발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4	■■■■■ ■■■■■■■■■■ ■■■ 건립공사	나과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및 전자카드 미시행	현지조치	계약서 재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5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6			현장별 보증서 관리 부적정 및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안내문게시 및 교육실시	조치 완료
7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IV.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	부서·기관명	서울교통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미작성

1. 내 용

- 서울교통공사는 A사 외 1개사와 '◇◇ ◇ ◇◇ ◇◇◇◇시설 설치공사(◇◇공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 ◇◇◇◇시설 설치공사(◇◇공구)	3,041	A사 외 1	2020.05.06.~ 2022.04.28.	39.2%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 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박○○ 외 68명의 근로자와 건설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만료일 및 임금지급일을 작성하지 않았다.
- 또한, 일일작업자 명부, 근로계약서를 비교해 본 바 고○○ 외 13명에 대하여 [표 2]과 같이 근로계약서(직영근로, 일용근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조○○, 김○○)에 대해서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노임을 지급되었다.

[표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역

연번	사용자	근로자	투입날짜	지적사항	확인결과
1	A사	이○○	2021. 2. 15.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박○○	2021. 2. 17.~ 2.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3		고○○	2021. 2. 17.~ 2.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4		김○○	2021. 6. 7.~ 6. 17.	근로계약서 미작성	
5		유○○	2021. 7. 10.	근로계약서 미작성	
6		김○○	2021. 7. 10, 21, 22	근로계약서 미작성	
7		이○○	2021. 7. 10.~ 7. 11.	근로계약서 미작성	
8		이○○	2021. 7. 11., 7. 16.	근로계약서 미작성	
9		김○○	2021. 7. 16.	근로계약서 미작성	
10		전○○	2021. 7. 21., 7. 22.	근로계약서 미작성	
11		고○○	2021. 7. 21.	근로계약서 미작성	
12		조○○	2021. 7. 23.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도급자감이 지급
13		황○○	2021. 7. 23.	근로계약서 미작성	
14		김○○	2021. 7. 28.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도급자감이 지급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사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액, 임금지급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	부서·기관명	서울교통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시정)

1. 내 용

- 서울교통공사는 A사 외 1개사와 ‘◇◇ ◇ ◇◇ ◇◇◇◇시설 설치공사(◇◇공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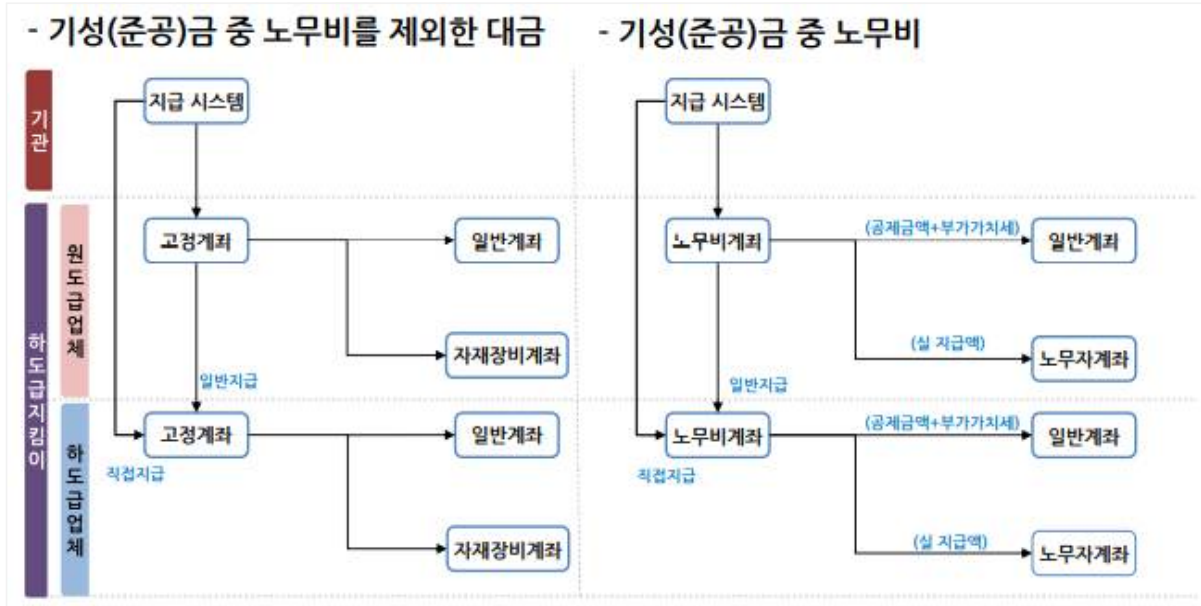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 ◇◇◇◇시설 설치공사 (◇◇공구)	3,041	A사 외 1	2020.05.06.~ 2022.04.28.	39.2%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의 기능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고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림]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 서울시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에서는 '20. 9. 7. 서울시 실·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조달청에서 운용하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관하여 “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에 따른 사전준비 및 교육교재 배부(건설혁신과-11663호)”를 하면서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지급은 하도급지킴이('20. 10. 31.까지는 서울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도록 통보하였다.
- 한편,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2020.10.31.까지는 '대금e바로 시스템', 2020.11.01.이후부터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표 2]와 같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구분지급하지 않고 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 현황

연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임차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임차금액 (천원)	위반내용
1	A사	■■■개발 (김○)	굴착기 (서울00겨0000)	'21.05.03. ~ '21.05.26.	8,415	하도금지킴이를 사용하지 않고 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2		■■■중기 (박○○)	굴착기 (서울00너0000)	'21.05.03.	550	
3		■■■중기 (문○○)	굴착기 (서울00하0000)	'21.05.06.	550	
4		■■■중기 (백○○)	굴착기 (0000)	'21.05.07.~ '21.05.25.	2,035	
5		▪▪건설중기 (김○○)	굴착기 (서울00너0000)	'21.05.14.	550	
6		◻◻건설중합 (이○○)	굴착기 (서울00너0000)	'21.05.14.	990	
7		□□중기 (양○○)	굴착기 (서울00너0000)	'21.05.20.~ '21.05.21.	1,100	
8		■■■중기 (형○○)	굴착기 (서울00겨0000)	'21.05.20.~ '21.05.21.	935	
9		□□운송사 (표○○)	크레인 (0000)	'21.05.10.	880	
10		■■■개발 (김○)	굴착기 (서울00겨0000)	'21.06.24.	1,100	
11		■■■건설기계 (박○○)	굴착기 (서울00너0000)	'21.06.22.~ '21.06.23.	1,210	
12		■■■중기 (형○○)	굴착기 (서울00겨0000)	'21.06.01.~ '21.06.04.	2,200	
13		□□건설중기 (장○○)	굴착기 (서울00너0000)	'21.06.07.~ '21.06.21.	5,599	
14		▲▲건설중기 (김○○)	굴착기 (서울00파0000)	'21.06.04.~ '21.06.25.	2,200	
15		△△건설기계 (김○○)	기중기 (대전00다0000)	'21.05.27.~ '21.06.26.	16,440	
16		▲▲건설중기 (주○○)	굴착기 (서울00겨0000)	'21.07.08.~ '21.07.28.	7,150	
17		△△건설중기 (김○○)	굴착기 (서울00파0000)	'21.07.03.~ '21.07.30.	1,485	
18		▶▶개발 (김○○)	굴착기 (서울00겨0000)	'21.07.16.	660	
19		▷▷건설기계 (박○○)	굴착기 (서울00너0000)	'21.07.22.	682	
20		▶▶건설중기 (박○○)	굴착기 (서울00너0000)	'21.07.07.	550	
21		▷▷개발 (장○○)	천공기 (경기00고0000)	'21.07.27.~ '21.07.30.	10	
22		▶▶크레인 (박○○)	크레인 (서울00샤0000)	'21.07.26.	605	
23		▷▷중기 (김○○)	기중기 (서울00나0000)	'21.07.22.~ '21.07.23.	3,300	
24		▼▼중기 (이○○)	공기압축기 (서울00가0000)	'21.07.22.~ '21.07.23.	1,320	
25		▽▽건기 (강○○)	기중기 (서울00가0000)	'21.07.06.~ '21.07.28.	11,660	
26		▼▼▼에셔 ▼▼지계(허○○)	지계차 (서울00라0000)	'21.07.12.	132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대금 지급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사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로 하여금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어 향후 대금지급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3	부서·기관명	서울교통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현장별 보증서 지연발행(시정)

1. 내 용

- 서울교통공사는 A사 외 1개사와 ‘◇◇ ◇ ◇◇ ◇◇◇◇시설 설치공사(◇◇공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 ◇◇◇◇시설 설치공사 (◇◇공구)	3,041	A사 외 1개사	2020.05.06.~ 2022.04.28.	39.2%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현장별보증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착공일인 2020.05.06.로부터 331일이 지연된 2021.04.01.에서야 현장별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표 2] 현장별보증서 지연 발행 내역

연번	건설사업자	지위	계약일	착공일	현장별보증서 발행일	위반내용
1	A사	수급인	'20.04.27.	'20.05.06.	'21.04.01.	331일 지연발행

- 그 결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시 구제가 어렵게 되는 등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사장은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가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되고, 현장별 보증서 제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4	부서·기관명	서울교통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시정)

1. 내 용

- 서울교통공사는 A사 외 1개사와 ‘◇◇ ◇ ◇◇ ◇◇◇◇시설 설치공사(◇◇공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 ◇◇◇◇시설 설치공사 (◇◇공구)	3,041	A사 외 1	2020.05.06.~ 2022.04.28.	39.2%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임대료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 건 공사의 수급인인 A사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서상에 건설기계의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표 2]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적정 내역

연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 (천원)	계약서 작성 부적정 내용
1	A사	▽▽건설중기 (김○○)	굴착기	서울00파0000	21.07.03.~ 21.07.30.	-	사용금액 미기재
2		◀◀건설기계 (박○○)	굴착기	서울00더0000	-	-	사용기간, 사용금액 미기재
3		◁◁건설중기 (박○○)	굴착기	서울00너0000	-	-	사용기간, 사용금액 미기재

연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 (천원)	계약서 작성 부적정 내용
4	A사	◀◀건기 (강○○)	기중기	서울00가0000	21.07.06~ 21.7.28.	-	사용금액 미기재
5		◀◀건설기계 (박○○)	굴착기	서울00더0000	21.06.22.~ 21.06.30	-	사용금액 미기재
6		◀◀건설중기 (장○○)	굴착기	0000	21.06.01~ 21.06.30	-	사용금액 미기재
7		◀◀건설중기 (김○○)	굴착기	0000	21.06.01.~ 21.06.30.	-	사용금액 미기재
8		◆◆개발 (김○○)	굴착기	0000	21.05.03~ 21.05.26.	-	사용금액 미기재
9		◇◇중기 (형○○)	굴착기	서울00거0000	-	-	사용기간, 사용금액 미기재
10		◆◆중기 (이○○)	천공기	0000	21.04.12.~ 21.04.22.	-	사용금액 미기재
11		◎◎중기 (이○○)	바이브 로함마	-	21.04.19.~ 21.04.22.	-	사용금액 미기재
12		◇◇중기 (김○○)	크레인	0000	21.04.22.~ 21.04.22.	-	사용금액 미기재
13		㉹㉹이엔씨 (윤○○)	공기 압축기	-	21.04.14.~ 21.04.22.	-	사용금액 미기재
14		◎◎건설기계 (전○○)	공기 압축기	-	-	-	사용기간, 사용금액 미기재
15		●●개발 (김○○)	굴착기	0000	21.04.24.~ 21.4.30.	-	사용금액 미기재
16		●○건설중기 (허○○)	굴착기	서울00하0000	21.04.25.	-	사용금액 미기재
17		○●건설중기 (김○○)	굴착기	00너0000	21.04.10.	-	사용금액 미기재
18		○○중기 (이○○)	굴착기	0000	21.04.23.	-	사용금액 미기재
19		●○건설중기 (이○○)	굴착기	서울00파0000	21.04.28.	-	사용금액 미기재
20		○●에서 ○●지게차(허○○)	지게차	서울00라0000	21.02.01.~ 21.04.23.	-	사용금액 미기재

○ 그 결과 임차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보호가 저해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사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감독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5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근로자 노무비 지연지급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 외 2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 ○○○○ 건립공사	7,343	A사 외 2	'17.11.30.~ '21.9.30.	B사 외 6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하수급인 B사는 구○○ 등 15명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61일 ~91일을 경과하여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 지연지급 현황

연번	하수급인	근로자	근로기간	임금지급일	지적사항
1	B사	구○○ 등 15명	'21.3.1~3.31	'21.6.30	91일 후 지급
2		구○○ 등 8명	'21.4.1~4.30	'21.6.30	61일 후 지급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노무비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

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
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6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하도급계약내용 지연 통보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 외 2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 ○○○○○ 건립공사	7,343	A사 외 2	'17.11.30.~ '21.9.30.	B사 외 6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 6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하도급 등의 통보)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 계약 등의 통보서)를 따르면,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의 통보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을 사용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 그런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 ○○○ ○○○ ○○○○ 건립공사'의 수급인 A사와 하수급인 C사가 체결한 석공사 하도급에 대하여 [표]2와 같이 2021. 6.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87일이 지난 2021. 8.27. 하도급계약 사실을 뒤늦게 통보하였다.

[표2] ○○○○ ○○○○ ○○ ○○○○ 건설공사

(단위:백만원)

공사명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시공사)	계약일	공사기간	공정률 (%)
○○○○ ○○○○ ○○ ○○○○ 건설공사	7,343	수급인 : A사	2019.12.26.	2017. 11. 30. ~2021. 9. 30.	84
	91	하수급인: C사	2021. 6. 1.	2021. 6. 1. ~2021. 9. 30.	

○ 그 결과 공사 시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과 비용을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부담할 가능성을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주처가 불공정 하도급 계약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하수급인 면담제 활성화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교육 실시.(주의요구)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7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와 '서울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서울 [표 1]과 같이 립공사	17,509	A사	B사 외 2	2020.11.13. ~ 2022.11.30.	26.7%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 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C사는 정○○ 외 96명의 근로자와 건설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았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연번	사용자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지급일	지적사항
1	C사	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		전○○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연번	사용자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지급일	지적사항
4	C사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		남○○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		허○○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		허○○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		권○○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9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0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1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2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3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4		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5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6		홍○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7		최○○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8		서○○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19		최○○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0		배○○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1		홍○○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2		한○○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3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4		양○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5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6		송○○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7		원○○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8		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9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0		원○○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1		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2		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3		원○○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4		전○○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5		임○○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6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7		남○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8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39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40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41		손○○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42		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43		구○○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44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45		신○○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46		윤○○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47		전○○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연번	사용자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지급일	지적사항
48	C사	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49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0		길○○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1		신○○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2		서○○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3		백○○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4		백○○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5		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6		장○○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7		신○○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8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59		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0		황○○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1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2		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3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4		신○○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5		신○○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6		방○○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7		홍○○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8		권○○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69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0		황○○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1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2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3		허○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4		안○○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5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6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7		전○○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8		황○○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79		최○○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0		이○○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1		하○○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2		하○○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3		유○○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4		송○○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5		송○○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6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7		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8		연○○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89	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90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91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연번	사용자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지급일	지적사항
92	C사	전○○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93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94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95		왕○○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96		설○○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97		김○○	2021.7월	임금지급일 누락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액, 임금지급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8	부서·기관명	도시기본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시정)

1.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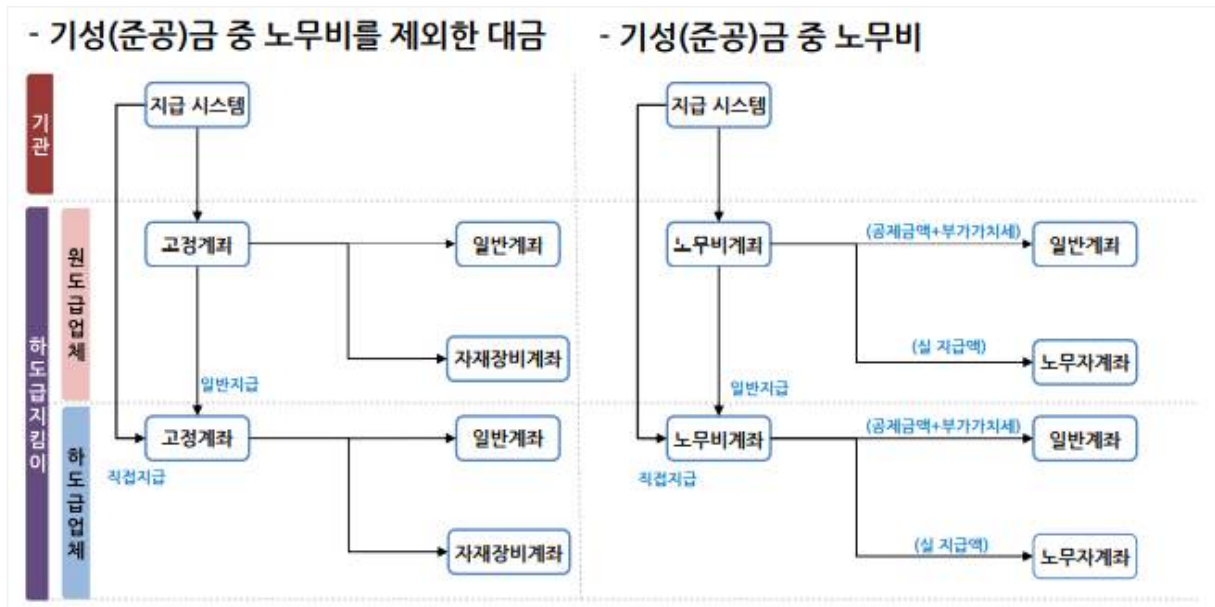
- 도시기본시설본부는 A사와 '서울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서울 ■■■■■■■■ ■■■■■■■■■ 건립공사	17,509	A사	B사 외 2	2020.11.13. ~ 2022.11.30.	26.7%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리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의 기능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고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림]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 서울시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에서는 '20. 9. 7. 서울시 실·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조달청에서 운용하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관하여 “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에 따른 사전준비 및 교육교재 배부(건설혁신과-11663호)”를 하면서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지급은 하도급지킴이('20. 10. 31.까지는 서울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도록 통보하였다.
- 한편,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2020.10.31.까지는 ‘대금e바로 시스템’, 2020.11.01.이후부터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표 2]와 같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구분지급하지 않고 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였다.

[포 2]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 현황

연 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임차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사용료 (천원/월)	임차금액 (천원)	위반내용
1	A사 (수급인)	▶▶전기 (이○○)	굴착기B.H06LC (서울00거0000)	2020.12.26~ 2021.07.30	9,500	3,762	하도금지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수급인, 하수급인의 일반계좌를 통하여 지급
2		□□건설기계 (황○○)	굴착기B.H08LC (인천00사0000)	2020.12.14~ 2021.12.13	12,000	78,053	
3			굴착기B.H06W (인천00바0000)	2021.01.08~ 2021.07.30	9,500	30,965	
4			굴착기B.H06W (인천00바0000)	2021.02.05~ 2021.07.30	9,500	15,466	
5			굴착기B.H06LC (인천00사0000)	2021.02.05~ 2021.07.30	9,500	36,696	
6			□□건설기계 (김만선)	굴착기B.H10LC (인천00러0000)	2021.04.06~ 2021.07.30	10,000	
7		○○○○중기 (김○○)	굴착기B.H10LC (서울00거0000)	2021.04.12~ 2021.07.30	10,000	31,075	
8		○○중기 (김○○)	굴착기B.H08LC (인천00사0000)	2021.05.22~ 2021.07.30	11,000	19,052	
9		▲▲전기 (이○○)	굴착기B.H10LC (인천00사0000)	2021.05.11~ 2021.07.30	13,000	24,530	
10		▲▲건설기계 (임○○)	굴착기B.H06LC (경기00거0000)	2021.06.15~ 2021.07.30	10,000	12,540	
11		■□중합중기 (이○○)	기중기(크람셀) (서울00가0000)	2021.06.28~ 2021.07.30	11,000	12,320	
12		□□기초 (송○○)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인천00마0000)	2020.12.21~ 2021.04.30	45,000	139,700	
13		(주)■□타워 (김○○)	타워크레인 (경기00가0000)	2021.06.10~ 2022.04.09	81,400	26,950	
14	C사 (하수급인)	■□중기 (조○○)	콘크리트 펌프카 (서울00가0000)	2021.07.06~ 2021.12.31	160 (천원/일)	7,150	
15			콘크리트 펌프카 (경기00고0000)	2021.07.06~ 2021.12.31	160 (천원/일)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대금 지급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하수급인)로 하여금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금지킴이)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하도금지킴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하도금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어 향후 대금지급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9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11.
------	---	--------	------------------	-----------------	---------

제 목 : 현장별 지급보증서 안내문 미게시(시정)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와 ‘서울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서울 ■■■■■■■■ ■■■■■■■■■■ 건 립공사	17,509	A사	B사 외 2	2020.11.13. ~ 2022.11.30.	26.7%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6항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은 별지 제26호의3서식(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에 따라 공사현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상 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를 현장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현장별 보증서 발행유무 및 보증기관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가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를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 내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0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내 용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사 외 1개사와 '◆◆◆◆◆◆◆◆◆◆◆◆◆◆◆◆ 건설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건설공사	427	주계약자:A사 부계약자:B사	2021.02.26. ~2021.10.23.	53%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 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일일작업일지와 노임대장을 비교 결과 3월 투입 인부 한식외공(20일공), 한식목공(2일공)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주택공사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지급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주택공사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상 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착공일인 2021.02.26.로부터 187일이 지연된 2021.08.31.에서야 현장별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를 현장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현장별보증서 지연 발행 내역

연번	건설사업자	지위	계약일	착공일	현장별보증서 발행일	위반내용
1	A사	수급인	'21.02.23.	'21.02.26.	'21.08.31.	187일 지연발행

○ 그 결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시 구제를 어렵게 할 우려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현장별 보증서 발행유무 및 보증기관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가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를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 내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3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1. 내 용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 ■■■■■ 개설회사'(이하 '이건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 ■■■■■ 개설회사	45,057	A사 외 1	'17.7.10.~ '21.12.31	B사 외 6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하여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정품건설산업(주)은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표 2] 건설기계 대여현황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내역

임차인 (하수급인)	임대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여현황	대여기간	지적사항
B사	●● 중기 등 8개 업체	펌프카, 천공기 등	'21.3월 ~'21.8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체불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4	부서·기관명	관악구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1. 내 용

- 관악구는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공원 ■■■■■■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공원 ■■■■■■ 건설공사	8,225	A사	'20.7.7.~ '22.3.26.	B사 외 3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점검일인 '21.9.8까지 설치하지 않았으며, 발주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건설근로자의 근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주휴수당 등 근무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관악구청장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이상 공사에 대해 전자인력관리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5	부서·기관명	관악구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1. 내 용

- 관악구는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공원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공원 ■■■■■■ 건설공사	8,225	A사	'20.7.7.~ '22.3.26.	B사 외 3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하여 직불합 의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B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표 2] 건설기계 대여현황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내역

임차인 (하수급인)	임대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여현황	대여기간	지적사항
B사	●●건설기계 등 11개 업체	굴삭기, 천공기 등	'21.4월 ~'21.8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체불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관악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6	부서·기관명	동작구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1. 내 용

- 동작구는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시설 신축공사 (▲차)'(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시설 신축공사(▲차)	7,987	A사 외 1	'20.1.13.~ '21.10.28.	B사 외 6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 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B사와 C사는 김○○ 등 6명, 김○○ 등 11명의 일용근로자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액 및 사용자 서명을 누락하였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No.	사용자 (하수급인)	근로자	계약서 작성일	지적사항
1	B사	김○○	2021.6.26	사용자 서명 누락
2		정○○	2021.4.6	임금액 누락
3		임○○	2021.4.6	임금액 누락
4		황○○	2021.4.6	임금액 누락

	사용자 (하수급인)	근로자	계약서 작성일	지적사항
5		이○○	2021.4.6	임금액 누락
6		김○○	2021.4.6	임금액 누락
7	C사	김○○	2020.11.9	임금액, 사용자 서명 누락
8		박 ○○○○	2021.2.28	사용자 서명 누락
9		이○○	2020.11.1	임금액 누락
10		김 ○○○○	2021.2.28	사용자 서명 누락
11		심○○	2021.2.28	사용자 서명 누락
12		김○○	2021.2.28	사용자 서명 누락
13		윤○○	2021.2.27	사용자 서명 누락
14		박○○	2021.2.28	사용자 서명 누락
15		김○○	2021.2.28	사용자 서명 누락
16		최 ○○○○	2021.2.28	사용자 서명 누락
17		천○○	2021.2.28	사용자 서명 누락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동작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액, 임금지급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7	부서·기관명	동작구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1. 내 용

- 동작구는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시설 신축 공사(▲차)'(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시설 신축공사(▲차)	7,987	A사 외 1	'20.1.13.~ '21.10.28.	B사 외 6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점검일인 '21.9.10 까지 설치하지 않았으며, 발주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건설근로자의 근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주휴수당 등 근무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동작구청장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이상 공사에 대해 전

자인력관리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8	부서·기관명	동작구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 미사용

1. 내 용

- 동작구는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 ▲▲시설 신축공사 (▲차)'(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비고 (하수급인)
▲▲▲▲▲▲▲▲시설 신축공사(▲차)	7,987	A사 외 1	'20.1.13.~ '21.10.28.	B사 외 6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19. 3. 28.시행)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예규 제722호, '18. 8. 23. 시행)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

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 시행안내」(건설혁신과-6975, '20.5.22.) 및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일정 변경안내」(건설혁신과-9566, '20.7.23.)에 따르면 우리 시(건설혁신과)에서는 '20.11.1.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 사용하도록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통보하였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D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하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미사용 내역

연번	지급항목	지급자 (하수급인)	지급대상 (근로자)	지급일	지급금액 (천원)	지급방법
1	노무비	D사	권○○ 등 157명	'21.4.30	131,08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하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노무비 지급
2			권○○ 등 89명	'21.5.31	51,832	
3			권○○ 등 115명	'21.6.30	92,694	
4			송○○ 등 68명	'21.7.30	42,250	
5			이○○ 등 20명	'21.8.31	12,576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동작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9	부서·기관명	도봉구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1. 내 용

- 도봉구청은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 △△△△ △△△사업(△△△△ △ 인근)'(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 △△△△ △△△사업(△△△△△ 인근)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상대자(시공사)	계약일	공사기간	공정률 (%)
△△△ △△△△ △△△사업	762	수급인 :A사 하수급인: B사	'20.12.29.	'20. 12. 29. ~'21. 6. 26.	7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2020. 10. 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제1항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2020. 10. 29.)」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제14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 [표]와 같이 도봉구청에서 발주한 '△△△ △△△△ △△△사업'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정한 조건보다 불리한 근로 조건이 설정되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건설근로자의 근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주휴수당 등 근무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봉구청장은**

건설일용근로계약 체결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자인력관리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주의요구)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0	부서·기관명	강북구청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시정)

1.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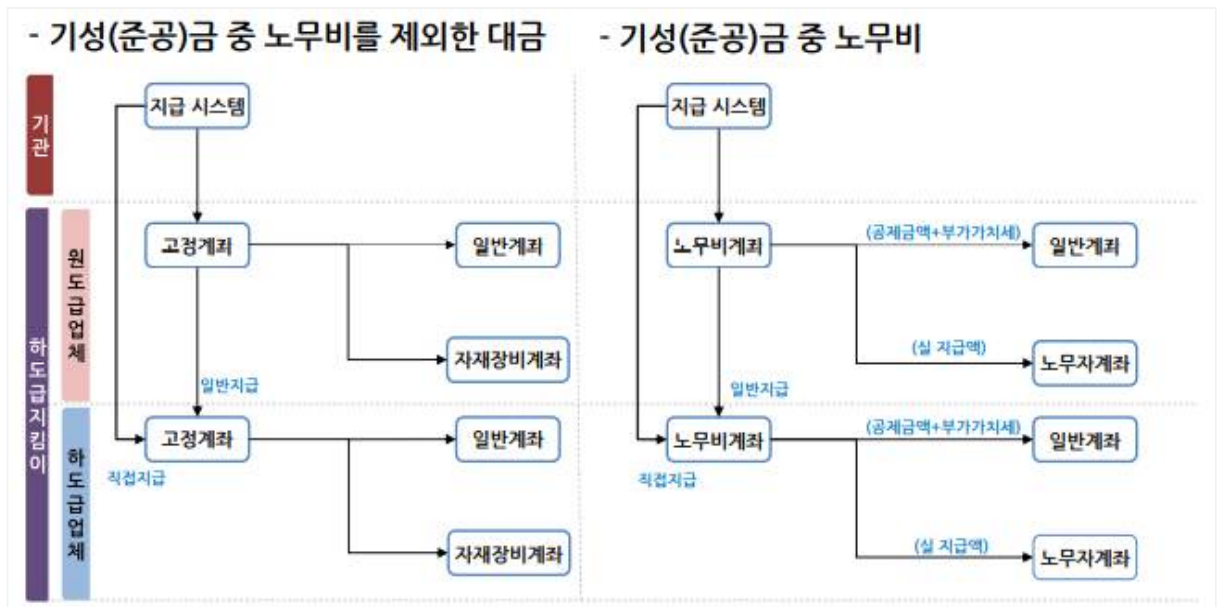
- 강북구청은 A사 외 1개사와 ‘□.□□□ □□□□□□ 조성사업’(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 조성사업	1,356	주계약자 : A사 부계약자 : B사	2020.10.30.~ 2022.01.29.	76%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리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의 기능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고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림]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 서울시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에서는 '20. 9. 7. 서울시 실·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조달청에서 운용하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관하여 “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에 따른 사전준비 및 교육교재 배부(건설혁신과-11663호)”를 하면서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지급은 하도급지킴이('20. 10. 31.까지는 서울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도록 통보하였다.
- 한편,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2020.10.31.까지는 '대금e바로 시스템', 2020.11.01.이후부터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표 2]와 같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구분지급하지 않고 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 현황

연 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임차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임차금액		위반내용
					지급일	지급액 (단위:천원)	
1	A사	●●중기 (최○○)	굴삭기 (서울00년00 00)	21.03.04. ~21.05.31.	21.4.30.	13,200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지 않고 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21.5.31.	15,400	
					21.6.29.	14,300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대금 지급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강북구청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로 하여금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어 향후 대금지급 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1	부서·기관명	강북구청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현장별 보증서 지연발행 및 안내문 미게시(시정)

1. 내 용

- 강북구청은 A사 외 1개사와 '□.□□□ □□□□□□ 조성사업'(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조성사업	1,356	주계약자 : A사 부계약자 : B사	2020.10.30.~ 2022.01.29.	76%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현장별보증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한편,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6항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은 별지 제26호의3서식(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상 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아래 [표 2]와 같이 착공일인 2021.03.11.로부터 27일이 지연된 2021.04.06.에서야 현장별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를 현장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현장별보증서 지연 발행 내역

연번	건설사업자	지위	계약일	착공일	현장별보증서 발행일	위반내용
1	A사	수급인 (주계약자)	'20.10.27.	'21.03.11.	'21.04.06.	27일 지연발행

○ 그 결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시 구제를 어렵게 할 우려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현장별 보증서 발행유무 및 보증기관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강북구청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가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를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 내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2	부서·기관명	강북구청 (나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내 용

- 강북구청에서는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와 '2021년 관내 [구체적 명칭] (연간단가)'(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2021년 관내 [구체적 명칭] (연간단가)	1,165	A사	B사	'21.03.08.~ '21.12.20.	70%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 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 및 하수급인 B사는 '21. 9월 건설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일용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표2] 근로계약서 미작성 목록

연번	건설업체 (사용자)	근로자명	계약기간	확인결과
1	A사	김○○	2021.9.1.~9.3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문○○	2021.9.1.~9.31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조○○	2021.9.1.~9.31	근로계약서 미작성
4		전○○	2021.9.1.~9.31	근로계약서 미작성
5	B사	백○○	2021.9.1.~9.31	근로계약서 미작성
6		이○○	2021.9.1.~9.3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강북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액, 임금지급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3	부서·기관명	강북구청 (나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시정)

1. 내 용

- 강북구청에서는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와 '2021년 관내 [표 1] (연간단가)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2021년 관내 [표 1] (연간단가)	1,165	A사	B사	'21.03.08.~ '21.12.20.	70%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표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내역

연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대표자명)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 (단위:천원)	부적정 내용
1	A사 (수급인)	△△건설기계 (김○○)	로더 (경기00노0000)	2021.04.01.~ 2021.04.30.	9,680	계약서 미작성 (직접지급합의서만 작성)
2		▲▲건설기계 (유○○)	굴착기 (경기00너0000)	2021.05.01.~ 2021.05.31.	8,800	
3		▲▲건설기계 (남○○)	굴착기 (경기00너0000)	2021.05.01.~ 2021.05.31.	9,900	
4		❖❖건설중기 (손○○)	굴착기 (경기00러0000)	2021.03.01.~ 2021.03.30.	9,680	
5		⊛⊛이엔지 (곽○○)	굴착기 (서울00너0000)	2021.05.01.~ 2021.05.30.	9,075	

연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대표자명)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 (단위:천원)	부적정 내용
6		☆☆건설기계 (김○○)	굴착기 (경기00너0000)	2021.05.01.~ 2021.05.31.	9,680	
7		☆☆☆건기 (김○○)	굴착기 (경기00너0000)	2021.03.01.~ 2021.04.30.	18,150	
8		☆☆☆건기 (조○○)	굴착기 (경기00러0000)	2021.05.01.~ 2021.05.31.	9,350	
9		☆☆건설기계 (김○○)	지게차 (서울00라0000)	2021.03.01.~ 2021.03.31.	7,920	
10		(주)☆☆☆☆☆☆ (유○○)	굴삭기 (서울00마0000)	2021.04.01.~ 2021.04.30.	10,780	

- 그 결과 임차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분쟁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대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강북구청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법령에 따라 작성·교부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건설공사의 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4	부서·기관명	강북구청 (나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지연 교부(시정)

1. 내 용

- 강북구청에서는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와 '2021년 관내 [표 1] (연간단가)'(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2021년 관내 [표 1] (연간단가)	1,165	A사	B사	'21.03.08.~ '21.12.20.	70%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위 제2항에 따라 현장별보증서를 발행 대신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직접지급합의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하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발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사용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지연 교부 내역

연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표자명)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 금액 (단위:천원)	부적정 내용
1	A사 (수급인)	☆☆건설기계 (김병광)	로더 (경기00노0000)	2021.04.01.~ 2021.04.30.	9,680	직접지급합의서 지연작성 (2021.6. 작성함)
2		**건설기계 (유미옥)	굴착기 (경기00너0000)	2021.05.01.~ 2021.05.31.	8,800	
3		**건설기계 (남중엽)	굴착기 (경기00너0000)	2021.05.01.~ 2021.05.31.	9,900	
4		**건설중기 (손경아)	굴착기 (경기00러0000)	2021.03.01.~ 2021.03.30.	9,680	
5		*이엔지 (곽시현)	굴착기 (서울00너0000)	2021.05.01.~ 2021.05.30.	9,075	
6		**건설기계 (김광호)	굴착기 (경기00너0000)	2021.05.01.~ 2021.05.31.	9,680	
7		***건기 (김동준)	굴착기 (경기00너0000)	2021.03.01.~ 2021.04.30.	18,150	
8		***건기 (조명식)	굴착기 (경기00러0000)	2021.05.01.~ 2021.05.31.	9,350	
9		**건설기계 (김진영)	지게차 (서울00라0000)	2021.03.01.~ 2021.03.31.	7,920	
10		(주)***** (유선옥)	굴삭기 (서울00마0000)	2021.04.01.~ 2021.04.30.	10,780	
11	B사 (하수급인)	**건설중기 (김남기)	굴삭기 (서울00너0000)	2021.03.01.~ 2021.04.30.	37,070	
12		**건설중기 (조한문)	굴삭기 (서울00거0000)	2021.03.01.~ 2021.04.30.	22,330	
13		**중합중기 (장봉기)	덤프 (경기00소0000)	2021.05.01.~ 2021.05.31.	9,350	
14		**중합중기 (최수정)	덤프 (경기00초0000)	2021.03.02.~ 2021.03.31. 2021.05.01.~ 2021.05.31.	17,875	
15		**건설기계 (김대원)	굴삭기 (경기00너0000)	2021.03.02.~ 2021.04.30.	9,350	
16		***건기 (김주형)	지게차 (경기00로0000)	2021.04.01.~ 2021.04.30.	9,900	
17		**중합중기 (허정재)	덤프 (경기00초0000)	2021.05.01.~ 2021.05.31.	9,680	
18		**중합중기 (조상현)	덤프 (경기00초0000)	2021.05.01.~ 2021.05.31.	9,900	
19		***건기 (김정환)	굴삭기 (서울00너0000)	2021.05.01.~ 2021.05.31.	9,240	

-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강북구청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하여 가급적 현장별보증서를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부득이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시점에 발급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의 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5	부서·기관명	성동구청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노무비 구분지급 위반

1. 내 용

- 성동구청은 A사 외 1개사와 ‘▽▽▽ ▽▽ 공사 (장기계속, ▽차)’(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공사 (장기계속, ▽ 차)	5,611	A사 B사	C사	2019.12.02. ~ 2021.09.30.	98.6%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 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외 1은 김○○외 37명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일용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19. 3. 28.시행)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22호, ’18. 8. 23. 시행)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 시행안내」(건설혁신과-6975, ’20.5.22.) 및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일정 변경안내」(건설혁신과-9566, ’20.7.23.)에 따르면 우리 시(건설혁신과)에서는 ’20.11.1.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 사용하도록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통보하였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하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성동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액, 임금지급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해당 공사의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

금 등 모든 대금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금지킴이)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6	부서·기관명	성동구청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시정)

1.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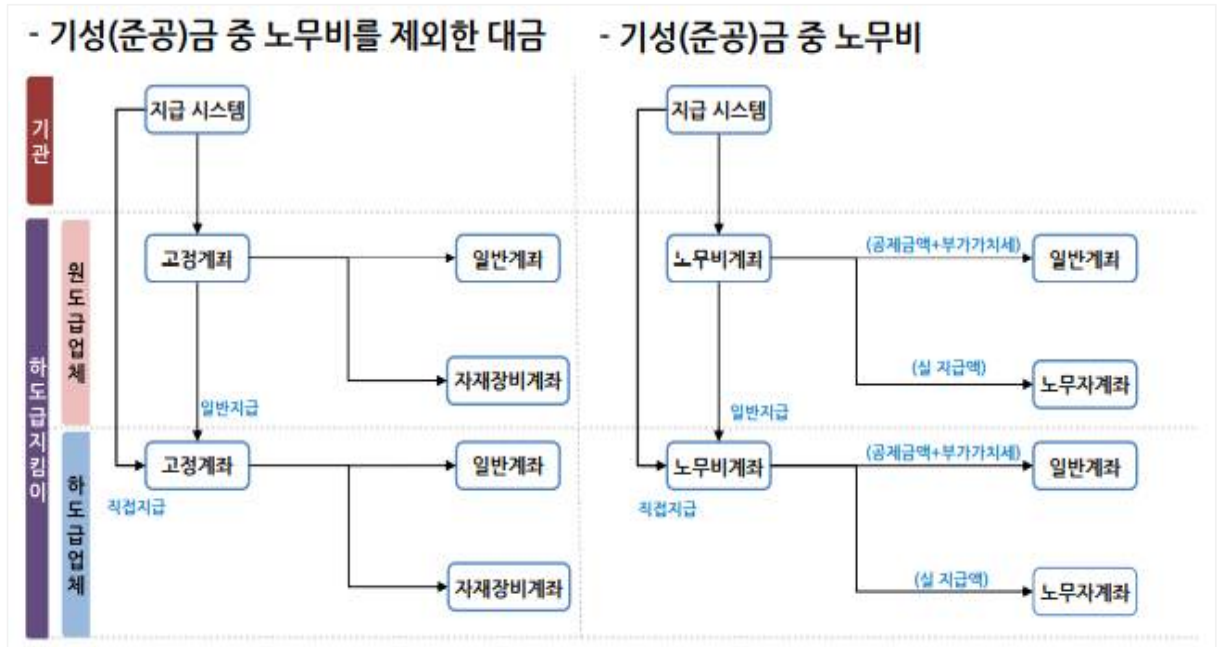
- 성동구청은 A사 외 1개사와 ‘▽▽▽ ▽▽ 공사(장기계속, ▽차)’(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공사 (장기계속, ▽차)	5,611	A사 B사	C사	2019.12.02. ~ 2021.09.30.	98.6%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리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의 기능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고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림]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 서울시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에서는 '20. 9. 7. 서울시 실·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조달청에서 운용하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관하여 “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에 따른 사전준비 및 교육교재 배부(건설혁신과-11663호)”를 하면서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지급은 하도급지킴이('20. 10. 31.까지는 서울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도록 통보하였다.

- 한편,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2020.10.31.까지는 '대금e바로 시스템', 2020.11.01.이후부터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표 2]와 같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구분지급하지 않고 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 현황

연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임차인)	임대업체명 (대표자)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임차금액 (천원)	위반내용
1	B사 (수급인)	♠♠크레인 (홍○○)	기중기 (서울00가0000)	2021.03.14.~ 2021.04.09.	12,045	하도금지킴이를 사용하지 않고 수급인의 일반계좌를 통하여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급
2		♠♠중기 (이○○)	덤프트럭 (서울00과0000)	2021.03.03.~ 2021.04.30.	6,468	
3		♠♠건설중기 (김○○)	굴삭기 (서울00너0000)	2021.03.15.~ 2021.03.28.	1,650	
4		♠♠건설중기 (이○○)	굴삭기 (서울00더0000)	2021.03.11~ 2021.04.30.	2,200	
5		⊙⊙건설중기 (정○○)	굴삭기 (서울00너0000)	2021.03.10.~ 2021.06.09.	2,420	
6		◆◆◆건설 (정○○)	굴삭기 (경기00타0000)	2021.03.31.~ 2021.04.29.	10,862	
7		■■건설중기 (이○○)	굴삭기 (서울00너0000)	2021.03.21.~ 2021.03.21.	550	
8		서울●●중기 (김○○)	굴삭기 (서울00너0000)	2021.04.29.~ 2021.04.30.	1,237	
9		●●건설중기 (김○○)	굴삭기 (서울00더0000)	2021.04.24.~ 2021.04.25.	1,485	
10		▣▣중기 (박○○)	굴삭기 (서울00너0000)	2021.04.11.~ 2021.04.27.	3,135	
11		▣▣이앤씨 (이○○)	굴삭기 (서울00하0000)	2021.04.22.~ 2021.04.28.	2,956	
12		▣▣▣▣굴삭기 (이○○)	굴삭기 (인천00사0000)	2021.02.07.~ 2021.02.27.	17,665	
13	A사 (수급인)	▣▣▣펌프카 (김○○)	콘크리트펌프 (인천00마0000)	2021.03.02.~ 2021.03.29.	2,420	
14		▣▣이앤씨 (이○○)	굴삭기 (서울00하0000)	2021.05.10	550	
15		▣▣▣건설중기 (박○○)	굴삭기 (서울00하0000)	2021.05.24.~ 2021.05.25.	1,320	
16		▣▣중기 (이○○)	덤프트럭 (서울00과0000)	2021.05.03.~ 2021.05.10.	1,848	
17		♣♣♣건설 (곽○○)	굴삭기 (서울00하0000)	2021.05.10.~ 2021.05.19.	2,007	
18		서울▣▣중기 (김○○)	굴삭기 (서울00너0000)	2021.05.10.~ 2021.06.10.	1,450	
19		▣▣▣▣중기 (박○○)	굴삭기 (경기00하0000)	2021.05.05.~ 2021.05.10.	1,210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대금 지급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성동구청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하수급인)로 하여금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어 향후 대금지급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7	부서·기관명	성동구청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현장별 보증서 미발행(시정)

1. 내 용

- 성동구청은 A사 외 1개사와 ‘▽▽▽ ▽▽ 공사(장기계속, ▽차)’(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공사 (장기계속, ▽차)	5,611	A사 B사	C사	2019.12.02. ~ 2021.09.30.	98.6%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현장별보증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 및 B사는 현장별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공사관리관은 현장별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고,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형식상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발주자가 포함된 3자 합의가 아닌 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사이의 합의로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로 발주자로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이 이루어지지지도 아니하였다.

-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성동구청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로 하여금 반드시 착공일 전까지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를 발행하고, 공사관리관이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8	부서·기관명	성동구청 (나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및 전자카드 미시행

1. 내 용

- 성동구청은 A사 외 2개사와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 ■■■■■■■■■■■■■■■■ 건립공사	14,130	A사 B사 C사	D사 외 8	2020.11.30 ~ 2021.02.12	36.6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을 서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 및 하수급인 2개사는 하도급지킴이로 노임이 지급된 334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대조해본 결과 건설근로계약서 일부 부적정 작성(근무기간, 지급일자, 지급단가 등)하고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현황

연번	계약상대자	근로자	근로기간	지적사항
1	A사	곽○○ 등 10명	'21.4.1~8.31	근무기간, 지급단가 등 미기입
2	F사	강○○ 등 175명	'21.3.1~7.31	
3	G사	강○○ 등 149명	'21.3.1~7.3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2020. 10. 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제1항에 따르면 공사에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의 하수급인 2개사는 6명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 그 결과 건설근로자의 근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주휴수당 등 근무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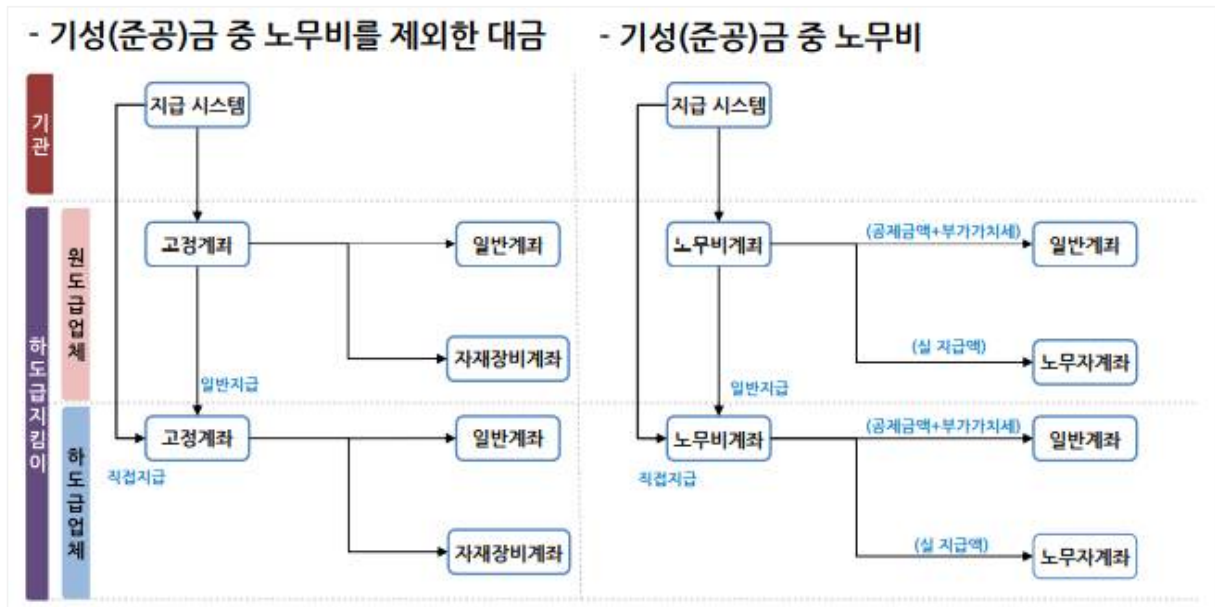
2. 조치할 사항

○ 성동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지급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이상 공사에 대해 전자인력관리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그림]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 서울시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에서는 '20. 9. 7. 서울시 실·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조달청에서 운용하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관하여 “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에 따른 사전준비 및 교육교재 배부(건설혁신과-11663호)”를 하면서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지급은 하도급지킴이('20. 10. 31.까지는 서울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도록 통보하였다.
- 한편, 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 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2항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설기계대여대금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표 2]와 같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구분지급하지 않고 (하)수급인의 일반계좌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미사용 현황

연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임차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임차금액 (천원)	위반내용
1	A사 (수급인)	ㄱ건설중기 (주) (김○○)	굴착기 (서울00가0000)	2021.03.04.~ 2021.04.16.	4,702	하도금지킴이 를 사용하여 구분지급하지 않고 수급인, 하수급 인의 일반계좌를 통하여 지급
2			굴착기 (서울00거0000)	2021.03.12.	907	
3			굴착기 (서울00하0000)	2021.03.14.~ 2021.03.15.	1,320	
4			굴착기 (서울00과0000)	2021.03.17.	770	
5			굴착기 (서울00너0000)	2021.03.19.	660	
6			굴착기 (서울00거0000)	2021.06.04.	935	
7			굴착기 (서울00타0000)	2021.06.07.	495	
8	D사 (하수급인)	ㄱ건기 (변○○)	굴착기 (서울00거0000)	2021.03.05.~ 2021.04.06.	7,095	
9		ㄱ건설중기 (박○○)	굴착기 (서울00더0000)	2021.03.23.	660	
10		ㄴ건설중기 (김○○)	굴착기 (서울00하0000)	2021.03.19.	660	
11		ㄴ건설중기 (김○○)	굴착기 (서울00하0000)	2021.03.06.	990	
12		ㄴ이엔씨 (강○○)	굴착기 (서울00하0000)	2021.03.27.~ 2021.03.29.	935	
13		ㄴ중기 (조○○)	굴착기 (서울00너0000)	2021.04.02.~ 2021.04.03.	1,320	
14		※중기 (정○○)	굴착기 (서울00너0000)	2021.04.05.~ 2021.05.20.	1,166	
15		!! ENC (박○○)	굴착기 (서울00거0000)	2021.05.15.	745	
16		ㄱ건설개발 (김○○)	굴착기 (서울00하0000)	2021.05.19.	660	
17		ㄴ건설기계 (이○○)	굴착기 (서울00너0000)	2021.05.20.	742	
18		ㄴ이엔씨 (강○○)	굴착기 (서울00하0000)	2021.05.20.	385	
19		ㄴ건설기계 (송○○)	굴착기 (0000)	2021.05.29.~ 2021.05.30.	1,166	
20		ㄴ건설중기 (김○○)	굴착기 (0000)	2021.05.29.~ 2021.05.30.	1,166	
21	E사	ㄴ중기 (김○○)	기중기 (서울00가0000)	2021.01.18.~ 2021.03.31.	23,133	
22		ㄴ건기 (엄○○)	로더 (인천00마0000)	2021.01.18.~ 2021.03.31.	23,683	
23		ㄴ건기 (김○○)	굴삭기 (서울00더0000)	2021.01.18.~ 2021.03.31.	16,500	
24		ㄴ중기 (김○○)	항타및항발기 (서울00-0000)	2021.01.18.~ 2021.03.31.	29,150	

- 그 결과 이 건 공사의 대금지급경로 및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지연지급 및 체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대금 지급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성동구청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로 하여금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해야하는 공사에서는 임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모든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어 향후 대금지급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30	부서·기관명	성동구청 (나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11.
------	----	--------	--------------	-----------------	---------

제 목 : 현장별 보증서 관리 부적정 및 안내문 미게시(시정)

1. 내 용

- 성동구청은 A사 외 2개사와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 ■■■■■■■■■■ 건립공사	14,130	A사 B사 C사	D사 외 8	2020.11.30 ~ 2022.02.12	36.6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6항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은 별지 제26호의3서식(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에 따라 공사현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상 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 그런데 아래 [표 2]과 같이 이 건 공사의 ① 수급인 A사, B사, C사는 2020.11.30. 착공하였음에도 현장별보증서를 100일 지연된 2021.03.09.에 발행하고,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② 하수급인 E사, F사는 현장별보증서는 발행하였지만, 지급보증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고, ③ 하수급인 D사, G사, H사, I사는 현장별보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등 현장별 보증서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연번	건설사업자	지위	계약일	착공일	현장별보증서 발행일	위반내용
1	A사	수급인	'20.11.30.	'20.11.30.	'21.03.09.	안내문 미게시 현장별보증서 100일 지연발행
2	B사					
3	C사					
4	E사	하수급인	'21.01.18.	'21.01.19.	'21.01.19.	안내문 미게시
5	F사		'21.02.17.	'21.02.22.	'21.03.17.	안내문 미게시
6	D사		'21.01.05.	'21.01.08.	\	현장별보증서 미발행
7	G사		'21.02.17.	'21.02.22.		
8	H사		'21.04.27.	'21.07.06.		
9	I사		'21.04.01.	'21.06.01.		

[표 2] 현장별 보증서 부적정 관리 현황

○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체불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성동구청장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가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를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 내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31	부서·기관명	성동구청 (나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21. 11.
------	----	--------	--------------	-----------------	----------

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시정)

1. 내 용

- 성동구청은 A사 외 2개사와 '■■■■■ ■■■■■■■■■■■■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 ■■■■■■■ 건 립공사	14,130	A사 B사 C사	D사 외 8	2020.11.30 ~ 2022.02.12	36.6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임대료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F사, G사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서상에 건설기계의 사용기간, 사용금액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기재하였다.

[표 2]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적정 내역

연 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임차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 금액	계약서 작성 부적정 내용
1	G사 (하수급인)	○○크레인 (박○○)	기중기 (서울00나0000)	-	-	사용기간, 사용금액 미기재
2		●●개발중기 (강○○)	콘크리트펌프 (서울00가0000)	'21.2.22.~	-	사용금액 미기재 사용기간 부적정 기재(시기만 기재)

연 번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임대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종류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 금액	계약서 작성 부적정 내용
3	F사 (하수급인)	⊗⊗크레인 (박○○)	기중기 (서울00나0000)	21.02.15.~ 21.12.31.	-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사용금액 미기재
4		⊗⊗개발중기 (강○○)	콘크리트펌프 (서울00가0000)	'21.2.22.~	-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사용금액 미기재 사용기간 부적정 기재(시기만 기재)

- 그 결과 임차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보호가 저해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성동구청장은

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감독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